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치대상자 특정 및 신원확인 조치〉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8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6.
3. 회 부 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원조직법」에 따른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지적은 현행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감치에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

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의4).

Ⅲ.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군사법원이 법정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상·체격 등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군교도소장 등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지문

1) 「**군사법원법**」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조조회를 요청하는 등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8조의4(감치 등) ① · ② (생략)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④ ~ ⑥ (생략)	제68조의4(감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이 경우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다.</u> <u>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군교도소장 등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유치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상 감치는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거쳐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함)에 유치하

여 집행하는 제도로써, 군사법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즉시 구속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함. 또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²⁾은 감치재판의 조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재판서 및 집행장에는 위반자의 성명·주거와 그 밖에 본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³⁾

- 그런데 감치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감치재판의 집행을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감치대상자가 인적사항의 제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감치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감치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인상·체격 등 객관적으로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

2)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제12조(재판서등) ①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반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다만,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은 급속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감치재판의 집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감치시설의 장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는 경우 우선 유치하고, 사후적으로 지문대조조회 요청⁴⁾ 등을 통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 「군사법원법」 제114조제2항⁵⁾은 구속영장에 피고인을 표시함에 있어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치와 구속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감치대상자의 유치에 관한 개정안의 규율방식은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배경에서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⁶⁾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군사법원법」의 감치제도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가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군사법원법**」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6) 의안번호 제2214579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33호, 윤준변의원 대표발의

7) 의안번호 제2214705호,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유사하고, 개정안 또한 일반법원의 감치절차에서 제기된 문제를 군사법원에서도 해소하려는 것인 만큼, 해당 사항을 어느 법률에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안의 심사내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감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치절차는 재판의 선고, 집행 명령 및 유치 등 일련의 단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규정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관련 법률안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5
